

축산업자의 소득금액 산출방법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1. 소득금액의 중요성

경제발전과 더불어 신용의 평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양호한 신용평가는 보유재산과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소득금액은 소득세 신고에 의해 공식화되기 때문에 매년 세무 신고하는 소득금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소득금액의 신고수준에 따라 세무조사 등 세무관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2.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국세청이 결정한 평균적인 이익률을 의미하는데 2000년도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용어 자체가 없어졌지만 실무적으로는 “(1-단순경비율)=표준소득률”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업종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본래 표준소득률이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고할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축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축산업 관련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축종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낙농육우	3.6%	96.4%	19.0%
양돈	4.7%	95.3%	12.3%
양계	4.3%	95.7%	12.0%

※ 주 : 표준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4. 소득금액의 산출방법

장부를 작성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산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 1년 동안의 매출액, 매출원가, 제반 경비를 집계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은 [매출액-매출원가-제반 경비](이를 '필요경비'라 함)가 되는 것이다.

5. 기장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금액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 ▶ 소규모사업자(축산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7,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 = 매출액 ×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

- ▶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다음 [산식1]과 [산식2]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산식1]

소득금액 = 매출액 - [사료, 약품, 자돈 등 구입액과 인건비 및 임대료 중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 - [매출액 × 기준경비율]

[산식2] 이는 2006년도 신고기준임.

소득금액 = 매출액 × 표준소득률 × 1.8배(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축산업자는 2배임.)

그러나 대부분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식2]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산식2]는 2009년도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매년 배율을 늘려 미기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많이 산출되도록 세법을 운영하고 있다.

6. 기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장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은 [매출액 × 표준소득률 × 1.8배]이므로 양계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text{소득금액} = \text{매출액} \times 4.3\% \times 2\text{배} = \underline{\underline{\text{매출액} \times 8.6\%}}$$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이 매출액의 8.6% 이하일 경우에는 기장을 하여 실제소득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7. 기장대상 매출규모

기장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금액은 매출액의 8.6%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액이 커지면 세액도 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득세액이 기장에 따른 비용(세무대행수수료 및 증빙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작은 수준의 매출액까지는 기장을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 육계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9억원, 산란계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7억원 정도까지는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액이 산출되지 않는다.

또한 기장을 하려면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대해 향후 문제시 추징되는 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정도 매출액까지는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